



# 아동 권리

## 다같이! 지켜주세요

가정마동학대, 신고해주세요



'아이'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행복, 꿈, 놀이, 가족,

사랑, 친구, 학교,

성장, 건강, 활기 ...



아동학대로 43명 사망...

건수 3만건 넘어

집에서 탈출해도 쉼터 찾...

2018년에

그러나,

“우리 곁의 모든 아이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학대 하루 67건...  
2018년에만 28명 사망

아동 지켜내지 못하는 ‘현실의 벽’

## 창녕 10살 소녀, 어떻게 학대 당했나



- “의붓아버지와 어머니가  
프라이팬, 쇠젓가락으로 몸을 지져”
- “쇠 막대기로 온몸을 때려”
- “목줄로 묶어 베란다에 가둬”
- “물이 담긴 욕조에 가둬 숨을 못 쉬게 해”
- “식사는 하루 한 끼”

지난 5월 29일, 창녕에서는 감금, 폭행 등의 학대를 받아오던 10대 아동이 집을 탈출해 발견되었고



— 청원진행중 —

# 11살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의 신상공개와 엄중처벌을 청원합니다.

참여인원 : [ 12,651명 ]

카테고리: 윤아/윤모

청원시작: 2020.06.04

청원마감: 2020.07.04

청원수: 12,651명

천안에서는 11살 아동이 학대로 인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지만 6월 4일 끝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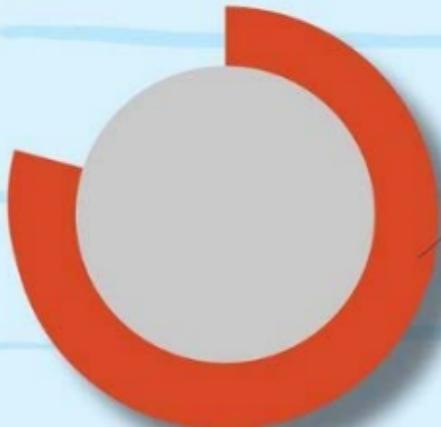
여행용 가방 속에서 심정지...9살 아이 끝내 숨져

## 2018년 한해 아동학대 건수

**24,604건**



'18, KOSIS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그 중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

**79.8%**

24,604

2018년 한해 아동학대 건수

24,604건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796

10,027

11,7

9,700

22,367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8. KOSIS(보건복지부, 민족화장실)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 의 확산으로 인해

아이들은 더 위험해졌습니다.

## 2018년 한해 아동학대 건수

**24,604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실직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등  
장기간 가정 내 체류로 인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가정이 많아지고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8, KOSIS(보건복지부, 최다수사기록) 기준

“부모와 아이가 가정에서  
함께 지내야하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79.8%**

24,604

2018년 한해 아동학대 건수

24,604건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인

교사와 보육기관 종사자는

아이를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중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

79.8%

24,604

## 2018년 한해 아동학대 건수

24,604건  
때문에

22,367

19,700

18,500

올 1월부터 3월까지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6887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약 500건 줄었지만”

이를 결코 긍정적인 신호로 인식해서는 안됩니다.

79.8%

24,604

## 2018년 한해 아동학대 건수

24,604건

학대가정 속의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이상행동을 감지할

선생님과 아동시설종사자들이 아이들을 만날 수 없는 만큼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우리가

관심을 갖고 더 많이 보고, 듣고, 경우에 따라 학대당한 경우 신고해야합니다.

79.8%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이럴 때 신고해주세요!**



**신체학대** : 사고로 보기에는 미심쩍은 상처나 멍이 있을 때,  
보호자가 아동의 상처를 숨기거나 설명이 부적절한 경우,  
아동의 비명, 울음, 신음소리가 계속 들리는 경우

**정서학대** : 가족 내 따돌림, 아이가 집밖으로 쫓겨난 경우,  
성인에게 정서적, 언어적 위협을 당하는 경우

**성학대** :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든 성적행동을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경우,  
아동이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이나 지식을 갖고 있는 경우 의심 필요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경우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이렇게 신고해주세요!

전화 : 국번없이 112 /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 아동의 이름, 나이, 성별, 주소 /  
학대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학대 상황 설명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세요.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애들이 있어요.  
재수없는 애들.  
내가 내 아이 때려죽이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가라고."  
<영화 '어린 의뢰인'>

아이의 훈육은,  
폭력을 결코 정당화 할 수 없습니다.

아이는 가정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아동학대신고, 망설이지 말아주세요.



모든 아이들이 안전해질 때까지  
그 누구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